

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운영 내규

2018년 2월 개정

2018년 3월 개정

제1장 총칙

제1조 (목적) 본 내규는 단국대학교 창학정신을 구현하기 위하여 설립된 대학원의 학칙 및 시행세칙에 따라 정치외교학과의 합리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여 정리하는 데 목적을 둔다.

제2조 (적용범위와 효력) 본 내규는 일반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석.박사과정 및 통합학위과정에 적용되며, 대학원 학칙 및 시행세칙의 범위 내에서만 효력을 발생한다. 이 내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학원 학칙 및 시행세칙에 준용한다.

제2장 입학관리

제3조 (우수학생의 유치) 정치외교학과 소속 교수들은 정치외교학과 석.박사 및 통합 학위과정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수 학생의 모집에 적극 노력한다.

제3장 교육과정 및 교강사 배정

제4조 (교과목 배정과 수강지도)

- ① 교과목은 개설전공을 고려하여 학생중심으로 설강한다.
- ② 교과목(강의) 배정에 있어 교수의 기득권은 인정하지 않는다.
- ③ 교과목(강의) 배정은 본과 전임교원이 맡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단, 학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외부 교수나 전문가에게도 개방할 수 있다. 전문가라 함은 해당 분야에 상당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인사를 말하며, 외부 강사 초빙 시 전임교원 회의를 통해 결정한다.
- ④ 지도교수는 학생이 전공과 부합되는 교과목들을 체계적으로 이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수강지도를 한다.

제4장 논문지도

제5조 (지도교수의 선정)

논문 지도교수 1명이 지도할 수 있는 학생 수는 석사학위과정 10명, 박사학위 과정 및 통합과정 6명 이내로 하되, 학과(전공)의 특성에 따라 소속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초과할 수 있다.

제6조(교수의 정년과 자격상실)

교수는 정년과 동시에 지도교수의 자격을 상실한다.

제5장 자격시험

제7조 (종합학력시험 과목과 배점)

종합학력시험의 과목과 배점은 대학원 학칙 및 동 시행세칙의 일반적 기준을 따른다.

- ① 석사는 24학점, 박사는 36학점 이상을 취득하거나 취득예정인자에 한해 응시할 수 있다.
- ② 석사학위 종합학력시험은 2과목으로 하고,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며 70점 이상 득한 경우 해당 과목의 시험을 통과한 것으로 한다.
- ③ 박사학위 종합학력시험은 4과목으로 하고, 각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며 70점 이상 득한 경우 해당 과목의 시험을 통과한 것으로 한다.
- ④ 통합학위과정 종합학력시험은 박사학위과정에 준한다.

제8조(종합학력 시험과목의 선택)

시험과목은 학생이 수강한 과목 중에서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다.

제9조(시험의 출제 및 채점)

모든 시험과목의 출제와 채점은 최근 당해 과목의 강의를 담당했던 교수가 맡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제10조 (종합학력시험 면제기준)

① 학생이 종합학력시험 신청 전까지 한국 연구재단 등재 후보지 이상, 단독 혹은 2인 이내 공저로 논문을 게재 할 경우 한편 당 종합시험 2과목을 면제한다. 석사과정의 경우 1편, 박사과정 의 경우 2편을 게재 했을 경우 종합학력시험 신청만으로 통과한 것으로 한다.

제11조 (외국어시험 과목 및 면제)

외국어 시험 과목은 대학원 학칙 및 동 시행세칙의 일반적 기준을 따른다. 외국어 시험의 면제는 학문 특성 상 관련된 언어(영어, 중국어, 일어, 불어, 서반아어)로 해당 언어권 국가의 대학 또는 대학원을 졸업 한 자에 한하여 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아 면제 할 수 있다.

제6장 학위과정

제12조 (석사학위 과정 선택)

대학원 학칙 및 동 시행세칙에서 정한 소정의 학점을 이수하고 자격시험을 통과한 석사과정의 학생은 학위논문작성 혹은 논문대체과정(연구논문 제출)을 선택할 수 있다. 논문대체과정의 경우 주임교수의 승인

을 득한 후, 대학원에서 정한 추가학점을 이수하고, 일정수준이상의 연구논문을 제출하여 지도교수의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7장 학위논문 심사 및 제출

제13조 (학위심사 청구논문 제출 자격)

대학원 학칙 및 동 시행세칙에서 정한 소정의 학점을 이수하고 종합학력시험을 통과한 석사과정 3학기 이상, 박사과정 5학기 이상의 학생은 지도교수와 상의하여 학위 심사 청구 논문을 제출 할 수 있다.

제14조 (연구계획서(Proposal)의 승인 및 심사)

대학원 박사논문 연구계획서 발표를 하고자 하는 학생은, 논문심사신청 최소 1개 학기 이전에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 학위논문계획서를 제출하고 학과교수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.

- ① 박사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여 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논문에 대한 연구계획서를 발표하여야 한다.
- ② 연구계획을 승인받기 위해서는 연구계획서에 논문제목, 목차, 연구의 목적, 필요성 및 범위, 이론적 배경, 분석의 틀과 구체적인 연구방법, 예상 결과 및 참고문헌 등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, 연구계획서 심의과정에서 학과교수들로부터 지적을 받은 사항들에 대해서는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수정 보완하여야 한다.
- ③ 연구계획서를 심사받고자 하는 자는 학위논문 연구계획서심사 신청서와 함께 연구계획서를 최소 심사일 7일전에 학과에 제출함으로써 효과적인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.
- ④ 지도교수는 심사청구 논문들이 제14조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점검한 후, 학과에 학술논문 별쇄본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
- ⑤ 지도교수는 심사일 10일전에 주임교수에게 심사일정을 통보하여야 하며, 주임교수는 전체 교수에게 심사일 7일전에 심사일정을 공지하여야 한다.
- ⑥ 연구계획서의 심사는 지도교수의 관리 하에 지도교수 포함 3인 이상의 정치외교학과 전임교수가 참석하여 진행하여야 하며, 그 결과를 주임교수에게 7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.
- ⑦ 학과교수회의의 승인을 받지 못한 연구계획서는 차기에 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.

제15조 (예비발표)

- ① 학위논문의 최종 심사를 받고자 하는 석/박사 학생은 심사신청 이전에 학과 예비 발표를 통하여 논문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 예비 발표 시 논문의 완성도가 현저히 낮다고 참석교수의 판단에 따라 차기에 수정 발표를 명할 수 있다.
- ② 학위 논문의 예비발표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와 함께 논문 계획서를 최소 심사일 7일 전에 학과에 제출 함으로써 효과적인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.

제18조 (논문심사위원)

- ① 예비발표신청 이후 학생의 지도교수는 대학원 학칙에 따라 최종 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.
- ② 심사위원의 추천은 대학원 학칙 및 시행세칙을 따른다.

제19조 (석사과정 논문대체 심사절차)

- ① 논문대체 연구논문 제출은 지도교수와 충분한 논의 이후 승인받아 진행한다.
- ②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은 학생은 주임교수의 확인 후 대학원 학칙 및 동 시행세칙에 따른 추가이수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.
- ③ 1항과 2항을 모두 충족한 학생은 지도교수의 최종승인을 받아 논문대체 심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, 심사결과는 정치외교학과 전임교수 3인 이상의 심사로 이루어진다.

제20조 (논문대체 제출)

논문을 대체하여 제출되는 연구논문은 국문파일과 함께 제본분을 학과로 제출하며, 제출된 자료는 학과에서 3년동안 보관 이후 폐기할 수 있다.

제8장 학과 운영위원회

제21조 (의사결정 방식)

학위과정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 의사결정은 전체교수 1/2이상의 참석(위임 포함)과 참석 교수의 2/3의 찬성으로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